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문화재보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보균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소유자·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문화재보호법」이 개정(법률 제18859호, 2022. 5. 3. 공포, 2023. 5. 4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의 등록·관리 의무 규정(안 제11조)

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조사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화 의무를 규정함

나.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대상, 관리행위 등 신설(안 제29조의2)

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대상, 관리행위, 집행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조문을 신설

다.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의 지정기준 구체화(영 별표1의2)

역사적·학술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등 해석상의 문제 개선

라.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추가(안 별표 3의2)

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중 지정문화재에 대한 파손과 원형 훼손이 발생한 경우 파손과 훼손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조항 신설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조사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에 등록·관리 하여야 한다.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관람료의 지원 등)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기존의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한 경우
2. 지역주민, 경로자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한 경우
3. 징수위치를 변경하여 관람료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

②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지정문화재의 청결, 상태점검 등 일상적 유지
2. 관람, 체험, 촬영, 편의공간 등 관람환경·시설 유지
3. 소방, 전기·통신, 냉난방 등 각종 시설·장비의 유지

4. 교육·홍보, 관람콘텐츠 개발·운영, 안내해설 등 관람프로그램 운용

5.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위

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 및 관람객 수

2. 관람료 감면 방법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감소액

3. 기타 감면된 관람료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자료

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신청인(신청대상자가 다수여서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신청인은 문화재청장에게 차년도 2월말까지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.

별표 1의2의 사적의 지정기준란 제1호 중 “해당 문화재가 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”를 “다음 각 목 중”으로, “이상을 충족하는 것”을 “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”으로 하고, 같은 란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란 다목 및 바목을 삭제하고, 제2호의 같은 란 라목 중 “절터”를 “절(터)”로 한다.

가. 역사적 가치

- 1) 시대성 :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종교·생활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,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
- 2) 역사적 인물 관련성 : 국가에 역사적·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
- 3) 역사적 사건 관련성 :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
- 4) 역사적 발전 : 특정기간 동안의 기술적 성취 또는 높은 정도의 창의성 등 역사적 발전을 보여주는 것

나. 학술적 가치

- 1) 중요한 정보 :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종교·생활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
- 2) 중요한 증거 :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종교·생활 등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할 것

별표 3의2 제2호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문화재 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하여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	법 제80조의5제2항 제2호	지정취소	
바. 문화재 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마목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	법 제80조의5제2항 제2호	시정권고	지정취소

훼손한 경우			
--------	--	--	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) ① ~ ⑥ (생략)	제11조(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⑦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조사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 체계에 등록·관리 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9조의2(관람료의 지원 등) ①</u> <u>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u> <u>1. 기존의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한 경우</u> <u>2. 지역주민, 경로자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한 경우</u> <u>3. 징수위치를 변경하여 관람료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</u> <u>②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국가지정문화재의 청결, 상태</u>

점검 등 일상적 유지

2. 관람, 체험, 촬영, 편의공간

등 관람환경·시설 유지

3. 소방, 전기·통신, 냉난방 등

각종 시설·장비의 유지

4. 교육·홍보, 관람콘텐츠 개발·

운영, 안내해설 등 관람프로그램

램 운용

5.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

위

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소유

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

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

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

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

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

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 및

관람객 수

2. 관람료 감면 방법 및 이로 인

해 발생한 수입의 감소액

3. 기타 감면된 관람료를 증빙

할 수 있는 각종 자료

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

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된

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신청

인(신청대상자가 다수여서 대표
자를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
그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
에서 같다)에게 지원할 수 있다.
⑤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
받은 신청인은 문화재청장에게
차년도 2월말까지 그 사용내역
을 제출하여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	
연 락 처	(042) 481 - 4789